

- 예산군 리개발(자문)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마을의 리 개발위원 조직 구성을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마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구체화 규정(안 제1조)
- 리 개발위원회 구성 위원 및 위원장 선임 명확화(안 제3조)
 - 당연직 : 이장, 노인회장,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장
 - 위촉직 : 주민총회로 선출되어 이장이 위촉
- 위원의 임기 명확화, 해촉사항 신설 등(안 제4조~제5조)
- 기타 상위법령 근거 조항 현행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
(안 제2조제5항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)
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(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그 밖의
 - 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3.10.19.~2023.11.07.)
 - 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 - 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(2023.10.30.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마을의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
 - 리개발위원회의 기능, 위원 구성, 위원장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사유 등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규정하여,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·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관계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목적,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